

2009년 1월 22일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개요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내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08. 11. 27.(1일간)

3. 대상기관 및 사무

○ 대상기관 : 의회사무국

○ 대상사무

- 2007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목별 예산잔액의 10%이상)
- 2007 ~ 2008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7 ~ 2008년 의정활동여비 집행내역
- 2007 ~ 2008년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 연간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 보도내용
- 의회 진정 · 탄원 · 건의 등 민원접수 · 처리실태

4. 감사방법 : 제출서류의 분석 · 검토, 질문답변

◆ 총 평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제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08년 11월 27일 1일간 회의식 감사를 함에 있어, 집행상의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시정케 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여, 의회보좌 기능을 강화시키고, 한정된 예산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였는가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 지적사항

○ 건 명 : 단체복 구입 예산편성 부적정

- 예산편성 기준상 의회 일반운영비에서 의원 현장방문 단체복 구입비로 390만원을 편성한 것은 2008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였고,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었음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건 명 :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부담금 예산편성 부당

-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으로 예산편성은 적정하나,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부담금으로 2008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한 것임.

◆ 건의사항

○ 건 명 : 의정활동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보도가 미흡함으로 개선 요망

-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것은 사전 홍보 부서에 제공하여 보도토록 하고
- 현장확인과 의결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도자료는 발생 즉시 제공하여 홍보토록 하여 주기 바람.

【붙임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요구 사항

연번	소관부서	감사대상	지적사항	조치요구사항
1	의회 사무국	○의회비 예산 편성 부적정	<p>○ 단체복 구입 예산편성 부적정</p> <p>- 예산편성 기준상 의회 일반운영비에서 의원 현장방문단체복 구입비로 390만원을 편성한 것은 2008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였고,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었음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p>	<p>- 2009예산편성시 규정에 없는 비목으로 의회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람.</p>
			<p>○ 충북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부담금 예산편성 부당</p> <p>- 충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예산편성은 적정하나 충북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부담금으로 2008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한 것임.</p>	<p>- 충북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 부담금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추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납부토록 조치 바람.</p>

【붙임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연번	소관부서	건의대상업무	건의사항
1	의회 사무국	<input checked="" type="radio"/> 의정활동 홍보 확대 요망	<p>○ 의정활동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보도가 미흡함으로 개선 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것은 사전 홍보부서에 제공하여 보도토록 하고 - 현장확인과 의결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도자료는 발생 즉시 제공하여 홍보토록 하여 주기 바람.